

202.49호

행 정 명 령

**법률의 일시 중지 조치 및 수정 유지  
재난 비상 상황에 관한 사항**

2020년 3월 7일 본인이 뉴욕주 전 지역에 주 재난 비상 상황을 선포하는 202호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을 발령함에 따라,

뉴욕주에서 코로나19의 여행 관련 및 지역 사회 감염 사례가 발견되었고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따라서 오늘 저 Andrew M. Cuomo 주지사는 모든 주 비상시 기관의 법령, 지방법, 조례, 명령, 규칙 또는 규정 또는 그 일부의 준수가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방해, 저해 또는 지연시킬 경우, 혹은 이러한 비상사태 대응 지원 또는 보조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조항을 일시 중지 또는 수정하기 위해 행정부법(Executive Law) 제2-B조 제29-a항에 의해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행정명령 202.39호에서 지속되고 포함된 바와 같이 행정명령 202.15호 및 행정명령 202.21호까지, 그리고 행정명령 202.29호를 포함하는 각 후속 행정명령으로 발령된, 후속 지침에 의해 대체되지 않은 법률 및 모든 지침의 일시 중지 및 수정 조치를 다음을 제외하고 2020년 8월 6일 목요일까지 30일간 더 연장합니다.

- 다음 법령 및 규정의 중단 또는 변경은 계속되지 않으며, 2020년 7월 8일 수요일을 기준으로 해당 법령, 규범 및 규정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 뉴욕법(New York Codes, Rules and Regulations, NYCRR) 10장 5-6.12(a)(4).
  - 2020년 법률 122장에 포함된 바와 같이, 이러한 일시 중지가 법령에 의해 대체된 바와 같이 종교 기업법(Religious Corporation law) 제 43 및 45항.
  - 공공 의견을 전자적 방식 혹은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환경보존부(Departmen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가 청문회를 중단하게 허용하기 위해 법령을 일시 중지하는 범위까지 환경보존법(Environmental Conservation Law) 3조, 8조, 9조, 13조, 15조, 17조, 19조, 23조, 24조, 25조, 27조, 33조, 34조, 35조, 37조, 75조, 6조, 및 NYCRR 552부, 550부, 601부, 609부.
  - 부동산 및 절차법(Real Property and Proceedings Law) 711조, 부동산법(Real Property Law) 232-a조, 다중주거법(Multiple Dwelling Law) 4(8)항 및 (9)조.
  - 비영리법인법(Not for Profit Corporation Law) 1517조, NYCRR 19장 203.3항, 203.6항, 203.13항, NYCRR 10장 77.7(a)(1).
  - 비영리법인법 1517조, NYCRR 19장 203.3항, 203.6항, 203.13항, NYCRR 10장 77.7(a)(4).
  - 공중보건법(Public Health Law) 4140항 및 4144항, 비영리법인법 1502조 및 1517조, NYCRR 19장 203.1항, 203.4항, 203.8항, 203.13항, NYCRR 10장 13.1항.

2020년 7월 7일 올버니시에서 본인이 서명하고 주 정부

관인을 날인하여 선포합니다.

주지사

주지사 비서